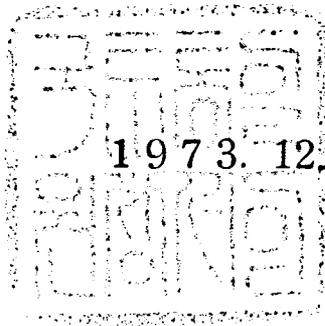


“울브리히트”의 沒落背景과 그것이  
東·西獨關係에 미친 影響

— 西獨의 東方政策을 中心으로 —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2.

研究機關： 東國大學校 中東歐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 李 泰 永

# 西独의 東方政策

## 目 次

序 言	1
第一章 東·西独分断現況	3
가. 東·西独政治概要	5
나. 東·西欧政治, 軍事 및 經濟体制	9
(1) 政治体制	9
(2) 軍事体制	13
(3) 經濟体制	15
다. 美·蘇의 对西欧政策	18
第二章 西独의 東方政策	23
가. 東方政策論	25
(1) 統一外交接近法	25
(2) 現實認定政策	29
(3) 緊張緩和政策	31
(4) 協商政策	34
(5) 欧洲第一主義	36
나. 東·西独接触	37
(1) 社会, 文化的接触	37
(2) 經濟的接触	49
(3) 政治的接触	55

## 序 言

「7.4南北共同声明」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長期間에 걸쳐 南北 韓間에는 人道的, 非政治的 내지 政治的 接觸이 本格化될 것으로 豫想되며 우리 民族에게는 統一問題를 主体的으로 解決하여야 할 歷史的 使命이 부과되었다.

東·西獨은 戰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經濟的, 非政治的 交流를 계속하여 왔으며 政治的 接觸도 1966年 基民黨-社民黨 大聯政期로 부터 비롯하여 1969年 「브란트」 首相의 執權을 契機로 本格化되어 現在 東·西獨間 一般條約 締結을 위하여 交涉을 展開하고 있다.

이와같이 東·西獨이 기타 戰後 分斷 國家와는 달리 本格的으로 接觸을 維持할수 있었던것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考察할수 있겠으나 戰後 歐洲에 形成된 政治, 軍事, 經濟等 國際政治 體制의 當然한 所産이라는 點을 注目할만 하다. 「브란트」 西獨 首相의 「東方政策」은 美·蘇을 비롯한 強大國의 「緊張緩和政策」과 「現狀凍結政策」 등 戰後 歐洲 政治의 추세와 步調를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歐洲 冷戰期에 있어서도 때로는 本格的으로 때로는 간헐적으로 維持되어 왔던 東·西獨間 經濟 및 非政治的 交流는 東·西獨 政治 接觸의 基盤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브란트」 西獨 首相의 東方政策 概念속에는 對蘇政策을 비롯하여 對東 歐圈政策과 對東獨政策 특히 統獨政策을 일괄적으로 包含하고 있다. 즉 對東獨政策뿐 아니라 全東歐 共產圈政策을 同時에 展開하여 緊張

# 才一章 京・西独分断現況

## 才一章 東·西獨分斷現況

### 가. 東·西獨의 政治概要

第二次世界大戰이 終了된 以後 27 個年이 經過하였다. 第二次世界大戰은 「아세아」地域에서 中国, 越南 및 韓半島와 西歐에서 獨逸 등 4 個의 分斷國家를 만들어내었다. 戰後 4 個分斷國은 國家統一을 위하여 各者의 獨特한 國內外與件 밑에서 國家總力을 集結하여 努力하여왔다. 다만 統一努力의 樣相과 統一可能性은 相異한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中国의 경우는 中国本土를 掌握한 中共의 壓倒的인 國內外政治的勢力에 의하여 「유엔」에서의 中国代表權이 自由中國으로 부터 中共으로 移轉되는 結果를 初來하였으며 앞으로 自由中國의 國際政治上的 發言權은 極히 制約될 것이며 이것은 中國의 統一方向에 影響을 미칠 것으로 判斷된다.

現在 戰爭이 進行中인 越南의 統一問題는 우선 越南内部의 政治的 問題를 解決한 다음의 第二次的 問題가 된다. 1954 年 「제네바」 協定은 17 度線을 暫定的인 境界線으로 軍事行動을 中止하고, 越南의 政治的 問題를 1956 年 南北越南의 總選舉를 통하여 解決하도록 規定하였으나 越南에 「고·딘·디엠」政權樹立과 더불어 共產軍은 越南에서 「게릴라」戰을 展開하여 戰爭을 擴大시킴으로서 統一問題보다는 戰爭終結問題가 우선하고 있다. 美國과 越南의 對越南戰略은 共產軍의 17 度線以北으로의 撤退를 基礎로 하고 있지만 만일 「베트콩」의 越南政治參與를 一部 認定하여 越南戰의 政治的 妥結이 이루어

회와 州政府를 갖고 있으며 이 州議會와 政府의 上位에 聯邦議會와 聯邦政府가 있다. 1949年 5月 23日 施行된 基本法이 西伯林을 除外한 10個州에 適用되고 있다. 西獨의 国会는 聯邦上院과 聯邦上院으로 構成되어 있다. 聯邦上院議員은 各州의 人口比例에 따라 各州政府가 任命하며 現定員은 41名으로서 各州政府代表의 會議體의 性格을 갖고 있다.

聯邦下院은 定員 496名, 任期 4年이며, 이외에 西伯林選出議員 22名은 議決權을 갖고 있지 않다. 下院議員은 選舉區單位로 單純多數決과 比例代表制를 併用하여 選出된다. 1969年 9月 28日 實施된 總選舉에 따른 聯邦議會內의 各政黨勢力은 「그리스토」敎民主同盟, 同社會同盟 (CDU CSU) 245, 社會民主黨 (SPD) 224 및 自由民主黨 (FDP) 27席이다. 社會民主黨은 1969年 9月 實施된 總選舉에서 第2政黨이 되었으나 第3政黨인 自由民主黨과의 聯立政府樹立에 성공하여 西獨政府樹立以來 20年만에 保守로 부터 革新政黨에로의 政權交差가 이루어졌다.

社會民主黨은 「라싸레」派의 全獨勞動協會와 「리브크레히트」 등의 獨逸勞動者協會聯盟이 1875年 「고다」大會에서 合同한 社會主義者勞動者黨을 母體로 한 政黨으로서 「나치」의 彈壓밑에 壞滅狀態에 있다가 戰後 1945年에 再建하여 1959年 「고데스 베르그」綱領採擇을 契機로 階級政黨의 立場을 버리고 國民政黨이 되었다. 1960年의 黨大會에서는 北大西洋條約機構內에서의 核武裝을 承認하고 1966年 12月 「그리스토」敎民主·同社會同盟과의 聯立政府에 參加하였

부응하여 社会主义制度의 法的規定에 重点을 두고 있다. 独逸統一問題에 대하여 旧憲法은 「独逸은 分割할수 없는 民主的共和国」이라고 規定하고 있었던 것에 反하여 新憲法은 「民主主義와 社会主义의 基盤下에서 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2個의 独逸國家는 努力한다」(第8條)라고 規定하므로써 「2個独逸國家」의 存在를 法的으로 明確히 하였다.

以上과 같이 東·西獨은 相異한 政治制度 밑에서 國內政治의 安定을 維持하고 있는바 이 安定은 各々 民主, 共產兩陣營으로부터 政治的 軍事的 經濟的保障을 받음으로서 더욱 鞏固化되고 있다.

#### 나. 東·西歐政治, 軍事 및 經濟體制

##### (1) 政治體制

東·西獨은 現在 各기 主權을 回復하였지만 第二次世界大戰의 戰敗國의 立場에서 國際政治의 影響力을 強力히 받고 있으며, 東·西獨을 위요한 國際政治勢力의 政策은 東·西獨의 統一政策遂行에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 이 觀點에서 볼때 韓半島의 境遇보다 東·西獨의 統一政策은 더욱더 많이 國際政治의 影響을 받고 있다. 東·西獨接觸 및 統一政策遂行과 國際政治勢力(美, 英, 仏, 蘇)과의 相關關係는 첫째로 東·西獨은 雙方陣營과 政治, 軍事, 經濟的으로 各者 結合되어 勢力均衡을 維持하고 있다는 側面과 둘째로 이 勢力均衡結果로 나타난 強大國의 現狀凍結政策은 逆으로 東·西獨의 政策方向을 制約하고 있다는 二元的側面에서 考察할수 있다.

獨逸統一을 위한 條約當事國의 共同努力과 協商에 의한 全獨逸의 平和的調整達成을 規定하고 있다. 1964年6月12日字 蘇聯·東獨友好條約은 「獨逸平和條約締結을 용이하게 하고 平和적이고 民主的 基盤下에서의 獨逸統一의 促進을 이룩함이 條約當事國의 所望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또 同條約第7條는 「두個의 主權獨逸國家가 存在하고 있다는 事實에 直面하여 하나의 平和, 民主統一獨逸國家의 創建은 兩主權獨逸國家間의 平等한 協商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다」고 確認하였다. 이 以外에도 1967年3月15日字 東獨-和蘭友好條約, 同3月17日字 東獨·체코友好條約, 同5月18日字 東獨·헝가리友好條約등 一連의 東獨과 共産國間의 友好條約은 「獨逸平和는 두個의 主權獨逸國家의 存在 認定을 原則으로 하고 將次 하나의 平和統一國家는 協商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東·西獨은 각기 雙方同盟國들에 대하여 暴力拋棄政策을 遂行할 義務가 부과되므로써 戰勝國의 政治的影響을 받고 있다. 西獨은 獨逸條約第3條에서 「유엔」憲章原則과 歐洲理事會定款의 目的과 一致하는 政治를 施行할 義務가 있으며 「나토」會員國家로서 「나토」條約第1條에 따라 國際關係에 있어서 모든 暴力의 威脅이나 暴力使用을 抑制할 義務를 지니고 있다.

東獨도 또한 1955年9月20日字條約第2條에서 歐洲 및 全世界의 平和와 安全保障을 위하여 「유엔」原則과 合致하는 國際政治의 遂行을 申明하였다. 그리고 1955年5月14日字 「바르샤바」條約當事國으로서 「유엔」憲章의 原則에 따라 暴力의 威脅과 行使를 抑制

理的隣接性 歐洲文化圏으로서의 歴史性등으로 歐洲國際關係에 있어서 첨예하게 反影되어 있음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 (2) 軍事体制

西獨과 東獨은 「나토」와 「바르샤바」軍事同盟체에 각각 偏入되어 軍事的側面에서 西歐와 東歐에 각각 密接히 結合되어 있다. 따라서 東·西獨間의 軍事的對決은 곧 全東歐와 全西歐間의 軍事的對決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現在 核武器를 中心으로한 東·西歐間의 軍事的均衡은 全歐洲의 緊張緩和를 招來하고 이것은 結果적으로 東·西獨間의 接近政策을 招來하게 된다.

1954年 10月の 「파리」條約에서 西獨의 再軍備와 「나토」加盟이 決定됨에 따라 西獨은 1955年 1月 西獨國防軍을 發足시켰다. 西獨은 1956年 7月 徵兵制를 施行하여 現在, 正規軍總兵力은 約 46萬 6,000名에 이르고 있으며 國防豫算은 200億「마르크」를 上廻하고 있다.

西獨은 1955年 5月 4日이래 「나토」會員國이며 「나토」는 逆으로 相互協調와 軍事防衛機構로서 西獨의 軍事的安全保障을 責任지고 있다. 또 西獨은 西歐의 共同防衛에 대하여 一定한 기여를 할 義務가 있으며 모든 西獨國防軍의 戰鬪部隊는 西歐의 全般的防衛체에 偏入되어 있다. 다만 西獨國防軍의 兵力水準은 西歐同盟의 規定에 따라 制限을 받고 있으며 西獨은 이를 양해하고 있다. 西獨은 原子 및 生化學武器의 生産과 기타 몇몇 武装体制를 拋棄할 것을 宣稱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事項의 嚴守如否는 西歐同盟의

르샤바」協定은 中歐에 있어서 「나토」보다 本質적으로 더 強力한 兵力을 維持하고 있으며 그 兵力規模는 每年 防衛態勢를 強化하므로서 增強되어 왔다. 그리고 東獨의 兵力은 「바르샤바」協定の 軍事機構에 通合되어 있으며 會員國에 軍事的事態가 發生할 時期에는 「바르샤바」條約의 全加盟國이 東獨의 軍事部隊配置에 관하여 集團적으로 決定할 權限을 保有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歐洲地域은 兩大軍事障營으로 明白히 分立對決狀態에서 軍事의 均衡을 維持하고 있다. 特히 東·西獨對決의 導火點이 되고 있는 西伯林의 軍事的保護는 美, 英, 仏, 西方三大強國의 義務로 되었으며 伯林에 있어서의 聯合國兵力의 維持는 1954年10月3日 西方9個國會議를 통하여 合法化되었다. 伯林뿐만아니라 西歐同盟의 軍事的適用範圍는 歐洲에 局限되었지만 歐洲, 北美洲, 北大西洋 領域의 一部를 「카바」하는 「나토」機構를 통하여 西歐의 軍事的 安全은 거의 完璧한 段階에 이르고 있다. 이點은 韓·美·防衛條約과 美, 日安保條約의 二元的相互條約에 의한 三角防衛體制를 통하여 安保對策을 추구하고 있는 極東安保體制와는 중한 差를 이루고 있다.

### (3) 經濟體制

西獨과 東獨의 東·西歐體制에 대한 結合現狀은 政治, 軍事의 側面뿐만아니라 특히 經濟的側面에서도 如實히 나타나고 있다. 東·西獨間내지 東·西歐間 緊張緩和의 要因은 皮상적으로는 政治, 軍事的側面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其實은 무엇보다도 經濟的要因이 支配的

取하여 英國, 「덴마크」, 「아이랜드」 및 「노웨이」의 同時加入이 實現되고 「歐洲自由通商地域을 統合하였으며 「아프리카」地域 18 個國이 參與하는 歐洲以外地域經濟와 結合하여 방대한 自由貿易圈을 形成하고 있다. 歐洲共同市場은 기타 「유엔」 「유크타트」 및 「갓트」와 經濟的 協同을 維持하고 있다.

한편 東獨은 蘇聯의 主導下에 있는 東歐經濟同盟체에 編入되어 있다. 東歐經濟同盟체인 東歐經濟相互援助會議 (코메콘) 은 1949年 1月 西歐의 「마살·폴렌」의 對抗機構로서 「모스크바」經濟會議에서 設立되어 1955年以來 社會主義陣營內의 國際分業을 促進하고 低開發國援助를 統制하고 있다. 「코메콘」은 蘇聯, 東獨 등 東歐 8 個國과 蒙古를 會員國으로한 東歐共產圈의 經濟統合機構이나 國立對外貿易機構間의 雙務協定으로 國際經濟問題를 處理하는 社會主義經濟體制의 特殊性과 蘇聯「루블」貨의 兌換性否足 및 會員國間의 經濟發展段階의 隔差로서 市場統合과 關稅同盟締結의 必要性 등은 稀薄한 狀態에 있다. 그러나 1970年 5月 10日부터 14日까지 「바르샤바」에서 開催된 第24次「코메콘」總會는 國際投資銀行設立에 同意하였다. 勞動의 國際的社會主義分業 即 生産의 專門化와 協業化를 實現시키기 위하여 借款과 融資를 公여하는데 合意를 畧으로서 東歐共產圈의 經濟統合을 促進시켰다.

東·西歐經濟圈에 각각 編入되어 있는 東·西獨經濟體制는 經濟大國으로서의 歐洲의 特殊性에 따라 國際經濟와 聯關되어 있으며 이러한 國際經濟秩序의 동요를 원하지 않는 國際政治勢力은 歐洲의

方政策과 이로 인한 西独經濟와 東歐國經濟의 結合은 美國經濟의 對東歐經濟國進出에로의 先導的役割을 담당할 可能性이 있으며 한편 歐洲以外의 其他地域經濟에서 西歐經濟와의 競争減少로 美國의 經濟力이 擴大되는 契機가 마련될 것이다.

다음으로 西独의 東方政策추진의 이면에는 蘇聯의 西方政策과 相互不可分の 關係가 있다. 蘇聯은 우선 西独의 先進經濟力을 利用하여 自國의 落後된 分野의 經濟開發을 促進시키려고 企圖하고 있다. 1972年4月7日 仮調印된 西独-蘇聯間長期貿易經濟協調協定에 따라 蘇聯은 1972年末부터 20年間 520億<sup>m</sup>의 天然가스를 西独에 供給하여야 하며 西独은 이 가스供給用大型「파이프」150萬屯과 15億「마르크」의 長期借款을 蘇聯에 提供하게 되었다.

그리고 蘇聯은 軍事戰略的見地에서 中·蘇國境地帶와 歐洲地域의 兩面戰線의 維持를 원하지 않고 있다. 中·蘇國境地帶에는 44個師團의 蘇聯地上軍이 配置되어 있는바 이 兵力은 蘇聯全地上軍 160個師團의 1/4에 該當한다. 東歐駐屯蘇聯地上軍은 31個師團으로서 東独에 만도 35萬名의 蘇聯軍이 駐屯하고 있다. 1966년부터 始作되는 蘇聯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中 經濟成長率은 5.5%에 不過하였으나 國防費는 每年 增加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軍事費감소의 必要性에서도 蘇聯은 緊張이 高潮되었던 中·蘇國境地帶의 兵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歐洲地域에서의 緊張緩和를 促進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歐洲의 緊張을 緩和하기 위한 蘇聯의 動向은 獨·蘇條約의 締結

蘇聯은 이와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이미 1969年 3月 「부다페스트」에서 開催된 「바르샤바」條約機構首腦會議에서 歐洲安全保障會議의 開催를 提議하였다. 1970年 10月 「뵘뵘두」 仏蘭西大統領의 蘇聯訪問을 契機로 發表된 仏・蘇共同聲明은 「適切히 準備된 歐洲安保會議의 開催는 歐洲緊張緩和를 促進하는 것이며 仏・蘇兩國은 同會議의 開催를 위하여 努力할 用意가 있다」라고 宣言한 바 있다.

1970年 12月 3. 4兩日間 「부랴셀」에서 開催된 「나토」閣僚理事會(外相會議)는 歐洲安保會議 開催의 可能性을 檢討하기 위하여 關係諸國의 會談을 開催할 用意가 있다고 宣言하였으며 1972年 5月 30~31日 「분」에서 開催된 「나토」閣僚理事會는 1973年中 歐洲安保會議를 開催할것에 合意하였다.

第二章 西 独 の 東 方 政 策

## 才二章 西獨의 東方政策

### 가. 東方政策論

#### (1) 統一外交接近法

1969年10月21日 「빌리·브란트」 西獨首相就任은 西獨國內政治에 있어서 1966年 大聯政의 樹立, 그리고 國際關係에 있어서 1970年8月12日, 獨, 蘇不可侵條約의 締結과 더불어 1960年代부터 1970年代까지의 獨逸政治史에 있어서 三大革命이라 일컬을만하다 이것은 戰後 20餘年間 執權해은 基民黨政權의 終息이었을 뿐만 아니라 對東歐圍과의 緊張緩和를 目的으로 한 「東方政策」을 積極的으로 追進하므로써 獨逸의 統一外交에 活氣를 불어넣기 始作하였다. 「브란트」西獨首相은 1969年10月21日 就任後 첫 議會施政演說에서 (1) 獨逸國民은 民族的自決權을 갖고 있다. (2) 獨逸政策의 現實的當面課題는 東西獨對決狀態에서 脫皮하여 獨逸의 「兩部分關係」를 解決함으로써 民族單一體를 成就하는 것이다. (3) 獨逸 땅에 並存하고 있는 「두개의 獨逸國家」는 결코 相互外國이 아니며 이들간의 相互關係를 特殊한 方法으로 規制하여 相互共存할 수 있게 할수있다 라고 천명하여 「하나의 獨逸民族內의 두個의 獨逸國家」概念을 設定함으로써 東方政策의 現實性을 誇示하였다.

「브란트」西獨首相의 東方政策의 窮極의 目標은 東西獨의 統一에 歸着되고 있다. 「브란트」首相의 「再統一된 獨逸」概念은 歐洲平和秩序속의 統一된 獨逸을 意味하며 「再統一은 19世紀的 民族國

에서 歐洲平和秩序樹立過程에서 獨逸의 知性人과 青年들이 「리더십」을 發揮하여 前衛隊役割을 担当하여야 한다고 強調한다.

둘째 ◦ 獨逸分斷狀態의 克服은 期間을 予言할 수 없는 長期的過程이다. 그러므로 現時點에서 當分間 可能한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야 한다. 理論論爭이나 獨斷論戰으로 貴重한 時間을 消費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現狀은 變化될 수 있으며 歐洲現狀變化의 促成劑로서 緊張緩和政策은 必的인 것으로 「브란트」는 看做하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볼때 傳統主義的 統一外交接近法은 「先統一後平和」原則으로써 統一을 위한 現實的接近方法이 아니며 自己主張의 反復에 不過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緊張緩和를 통한 對東方接近은 其實 어떤 새로운 概念創造가 아니라 現實에서 싹트고 있는 意思疎通의 줄기에 물을 뿌림으로서 發育시켜나가는 長期的眼目的 養生作業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셋째 「브란트」西獨首相은 「이데올로기」는 克服될 수 있다는 信念에서 出發하고 있다.

- (1) 長期的觀點에서 볼때 共產主義者의 使命意識은 漸次 減退一路에 있으며
- (2) 共產主義者는 自體의 終末을 意味하는 世界革命만을 主張할 수 없게 되었으며
- (3) 共產主義國家는 최소한 國民의 社會福祉와 個人의 自由保障을 實現시켜야 하며
- (4) 오늘날 全歐洲社會는 「教理에서 부터 生産으로, 그리고 權力의

다른 表現語句로써 自由에 대한 信念으로 부터 流出된 平和의 冒險 試圖인 것이다. 技術, 科學, 文化, 經濟, 知識 「스포츠」 學生交流를 통한 對話 및 理解는 現在 특히 歐洲에서 活潑히 進行되고 있다 各自의 利害關係와 狀況을 理解함으로써 意見合致點을 發見하는데 寄與하고 있다. 確實히 歐洲는 이제 새로운 歐洲로 變貌하고 있다. 이 새로운 歐洲의 形成過程속에서 統獨問題 역시 現實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接近하고 있는 것이다. 「브란트」西獨首相의 東西獨交流論의 中心企劃目標는 接近의 積極化를 통하여 獨逸民族의 分離現象은 統合可能性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基本判斷 밑에서

(1) 東西獨國民이 共生할 수 있는 整頓된 秩序創造를 追求하며  
(2) 分斷으로 苦痛을 받고 있는 獨逸國民生活을 改善하며  
(3) 東西獨接觸에 의한 政治的共同社會意識을 確固하게 維持하려는 것이다. 故로 法律的이 아닌 政治的接近이며 道德性이 아닌 合目的性의 問題요. 對立이 아닌 共存의 變化속에서 東方國家와의 接近 및 獨逸의 接近을 통한 分斷의 克服, 이것이 獨逸國民이 實現시킬 수 있는 現實主義的 統獨政策이다.

## (2) 現實認定政策

「브란트」西獨首相의 東方政策은 歐洲의 現實認定에 基盤을 두고 있다. 「브란트」首相은 東方政策을 展開함에 있어서 빈번히 「現實」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으며 不斷히 歐洲의 現實認定을 強調하고 있다. 특히 才二次世界大戰 戰後秩序가 20餘年에 걸쳐 固着化되었으며, 獨逸分斷과 東西軍事同盟體間의 對決狀態의 持續이란

政治体制의 安定뿐만 아니라 1960年度以後는 經濟發展을 實現하여 1960년부터 1969年間の 年平均經濟成長率 4.5% (西獨은 同 期間中 4.8%)를 維持하고 東獨은 現在 東歐圈에서 最高의 生活水準을 持續하고 있다. 東獨國民의 生活水準은 「헝가리」「체코」보다 1/3程度 높으며 蘇聯의 2倍이다. 「브란트」西獨首相은 이러한 東獨의 政治的, 經濟的体制의 安定化라는 「現實」을 認定하고 西獨과 西伯林間의 通路問題, 「나토」와 「바르샤바」機構間의 軍縮實現 및 歐洲安全保障會議의 開催問題등 統獨外交의 当面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東方政策을 追進하였다.

### (3) 緊張緩和政策

東方政策은 歐洲緊張緩和와 平和秩序를 부르짖으며 武力拋棄宣言을 하고 東歐諸國이 國交正常化條件으로 提示한 諸條件을 實質的으로 認定 혹은 受諾하고 있기 때문에 平和와 양보일색인 듯한 의아심을 자아내나 一方的인 양보나 保障없는 「슬로전」의 提示는 결코 아니다. 「바르샤바」條約國들은 (1) 「獨逸民主共和國을 하나의 國家로 承認할 것. (2) 獨逸의 兩部分間의 境界線과 「오데르-나이제」線을 國境線으로 認定할 것. (3) 核武器保有 努力 및 野望을 拋棄할 것 및 (4) 西伯林을 東獨領土內에 存在하는 하나의 自律的 政治單位체로 認定할 것등을 계속 主張하여 왔다.

이에 對하여 「브란트」西獨首相은 無條件 事前承認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브란트」首相은 伯林問題에 對하여 強硬한 立場을 堅持하고 東方側의 無條件的인 事前要求에 對하여서도 「만일

「브란트」는 現實을 克服하기 위하여 果斷性있게 獨逸領土위에서의 두個의 異質的政治体制 혹은 政治社會를 認定하는 것이다. 1967年 8月4日 當時 「브란트」外相은 「루마니아」訪問時의 한 演說에서 東方政策의 基調가 和解政策임을 強調하였다.

緊張緩和政策의 具體的表現은 武力拋棄宣言이다. 武力拋棄宣言을 最終目標로 하는 緊張緩和政策을 통하여 歐洲平和秩序를 樹立함에는 一連의 基本原則이 提示되고 있다.

(1) 平和秩序樹立에 있어서 歐洲는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異質的體制가 存在하고 있으며 이들 構成國은 主權國家라는 事實을 반드시 考慮하여야 하며 (2) 어떠한 形態이든 他國의 內政不干渉과 武力行使 및 威脅拋棄宣言을 實効케 할 수 있는 保障이 있을것

(3) 歐洲諸國間의 問題에 「유엔」憲章의 原則이 適用될것

(4) 情報의 自由로운 交換 및 通行의 自由가 可能한 限 最大로 擴張될 것 (5) 「나토」會員國들은 「나토」條約에 表現된 바와 같이 民主主義 個人自由, 法治主義原則을 平和秩序속에서 保護받을 수 있다는 確信을 갖일 것. (6) 歐洲全地域에 있어서의 效率的安保體制의 實現과 이 安保體制에의 美國과 蘇聯의 參與등이다.

있다. 그러면서도 單刀直入의 協商으로 蘇의 策略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한 狀況分析과 相對方의 真意把握에 敏感하여야 하며 過去歷史에서 「라팔로」條約에 대한 의구심같은 것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하여서는 蘇聯과 匹敵할만한 相對國이 있어야 한다고 附言하고 있다. 따라서 直接的이든 間接적이든 최소한 美國의 默示的合意, 支援, 參與 등이 없는 限 統獨과 連結될 수 있는 協商은 不可能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獨逸의 安全保障과 伯林守護 및 統獨問題를 위해서는 美國의 責任과 行動이 莫重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蘇聯을 協商의 才一對象으로 看做하여 對蘇協商을 試圖한 點에 있어서는 「基民黨」政權에서도 本質적으로 다를 바 없다.

다만 基民黨政權은 積極性, 計劃性을 欠如하였고 「先統一後平和原則」을 固執함으로써 冷淡한 反應에 直面하였을 뿐이다. 一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蘇聯의 平和共存原則의 目標設定中 ((1) 原子戰回避 (2) 西方同盟弱化 (3) 非同盟國家吸收) 「브란트」西獨首相은 原子戰回避問題에 깊은 関心을 쏟고 있다. 그리고 世界의 真正한 共存의 機會란 蘇聯의 教條主義的 「이데올로기」의 戰略이나 政策때문 이 아니라 利害關係 (國家利益) 에 依存한다고 確信하고 있다.

「브란트」首相은 1968年5月10日 「구스타프스트레 제만」90回誕生 祝祭에서 「現世界는 利害關係의 時代이다. 平和的手段과 理性에

## 나. 東西獨接觸

### (1) 「社會文化的接觸」

政治的次元에 있어서의 東西獨接觸은 相互間에 개재하고 있는 意見對立으로 因하여 여러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었지만 非政治的接觸 내지 社會文化的接觸은 1945年부터 1961年8月以前까지 間헐적으로 實施되어 왔으나 東獨으로 부터 西獨으로의 移住者가 急增함에 따라 東獨當局은 이를 防止하기 위한 措置로 伯林障壁을 構築(1961年8月12日)하였고 이에 따라 社會文化的接觸도 一時的으로 中斷되었다. 그러나 西獨은 東獨治下의 獨逸人과 人的, 文化 및 「스포츠」交流 등으로 人道的交流關係를 回復하고 緊張緩和를 摸索하는 同時 全獨逸國民이 相異한 兩體制下에서도 異質的社會固定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努力하였다. 한편 이와같은 西獨側의 意圖와는 달리 東獨은 政治人的接觸을 通하여 「하나의 獨立國家」로 認定받기 위해 狂憤하였고 人的, 文化 및 「스포츠」等 交流를 政治的目的으로 利用하려 하였다.

人的交流는 1963年「브란트」伯林市場이 「아부쉬」東獨副首相에게 東西伯林往來再開를 위한 勸翰을 보낸뒤, 이어 兩獨間의 實務陣이 몇차례의 會晤 끝에 1963年12月17日 東·西伯林「通行証協定」이 締結된 바 있으며 지난 1971年9月3日 4大國(美, 英, 仏, 蘇) 伯林協定假調印後, 東獨과 西獨, 東獨과 西伯林間에 協議되어온 2個의 伯林協定施行細則이 1971年12月11日 成功的으로 妥結되고 이어 1972年6月3日 西獨과 西伯林間의 通行自由, 西伯林市民의 東伯林 및 東獨訪問 그리고 西伯林市民에 對하여 西獨地域과 同等한

同盟員의 旅行을 禁止시켰다. 따라서 東獨人의 西獨旅行者數는 甚히 減少되었다. 1959年以來 西獨旅行許可發給申請은 面單位로 構成된 「全獨問題委員會」의 決議에 反하여 만일 申請人의 申請이 西獨으로 되나간 事實이 確認되면 西獨旅行이 不可能하게 되며 特히 面人民警察署의 最終的承認을 必要로 하였다. 1961年8月13日 伯林障壁構築에 따른 休戰線地域封鎖強化로 因하여 東獨人의 西獨旅行은 黨員, 鐵道員, 運輸士 및 船員 등 特殊人으로 極히 制限되었다. 그러나 東獨當局은 1963年以後 政策的利得을 目的으로 65歲 以上の 年金受領者에 限하여 年金支払棄避와 扶養의무 해방이라는 政策的目的에서 西獨 및 西伯林旅行을 合法的으로 認定하여 왔다.

以上과 같은 統制 밑에서 東獨人의 西獨旅行者數는 1963년 및 1964년에는 每年 約 3萬名으로 推算되며, 1965년에는 不過 18,000名程度였고, 1966년에는 約 16,100名이며, 1967년에는 約 13,300名程度, 1968년에는 9,500名에 不過하였다. 이 統計中 80%가 65歲 以上の 年金受領者이고 其他 20%는 身體障擱로 因한 勤務不能者였다.

한편 西獨人의 東獨旅行者는 東獨當局의 滞在許可下에 年1回 東獨居住近親을 訪問할 수 있었다. 訪問者의 東獨滞在期間은 4週日間으로 限定되었다. 기타 西獨人은 每年 東獨의 「라이프찌히」 商品博覽會參觀目的으로 東獨訪問이 許容되나 西獨實業家들이 主權하는 東獨觀光旅行은 許容되지 않았다. 그리고 東獨研究機關 및 團體의 招請으로 一部 西獨人의 個人的 團體的 東獨旅行이 許容되었다.

西獨人의 東獨旅行者數는 1967年度에 約 1,400,000名, 1968年

부 條約에 의하여 蘇聯은 聯合國協定을 無視하고 鐵道管理權을 一方的으로 東獨政權에 移讓하였다. 이에 따라 東·西獨貨物運送量의 40%는 東獨鐵道가 担当하고 나머지 60%는 西獨聯邦鐵道가 担当하여 西獨鐵道當局은 自己區域內의 運送料만을 徵收하도록 되었다. 以上과 같이 東·西獨 및 西伯林間의 交通은 「東獨의 國家說」에 立脚한 妨害政策으로 因하여 決定的制限을 받고 있으나 西獨과 西伯林間의 人的 物的인 航空輸送은 여전히 東獨의 妨害로부터 除外되고 있다.

東獨이 主張하고 있는 2國主權國家說에 立脚한 固執에 의한 人的 交流의 妨害工作도 國際情勢의 變遷에 따라 커다란 變動을 招來하였다. 獨蘇·獨波條約의 西獨議會批准을 條件으로 東獨政權은 長期間禁止되었던 西伯林市民의 東伯林 및 東獨旅行을 可能케 하는 緩和된 方案이 東·西獨關係者會談에서 合意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西伯林市民도 西獨國民과 같이 東伯林 및 東獨에로의 旅行은 물론, 東獨의 青年들도 緊急한 家庭事情을 理由로 西獨에 旅行할 수 있는 可能性이 부여되었고 이를 위한 東西獨通行協定이 1972年 5月5日부터 東伯林에 있었던 「에곤 바르」西獨國務相과 「미카엘 코울」東獨國務相間의 會談에서 最終적으로 決定을 보게 되어 同年 5月12日 「본」에서 앞서 指摘한 東·西獨通行協定이 假調印되었다. 東·西獨間의 人的往來에 수반하여 郵便 및 電信往來는 休戰線을 넘어 繼續되어 왔다. 東·西獨間의 郵便往來는 便紙, 小貨物 및 郵便小包등의 往來이며, 送金 및 商品의 부송은 禁止되어 있다. 1951년부터 1968年上半期까지 西獨이나 西伯林으로 부터 東獨이나

該官庁은 身元關係를 管轄하고 있는 地区委員會에로 부터 西獨의 該州務部長官앞으로 協調를 要請하는 公文을 發送하는 例가 許多하다. 東獨當局의 共助要請에 대한 處理方法은 물론 統一性은 없으나 대개 西獨의 當該官庁은 그 回答을 直接 東獨의 當該官庁에 發送하고 있다.

또 東·西獨의 法院 및 檢察廳間에는 民刑事上の 問題에 있어서 法律上の 共助關係가 維持되고 있다. 萬一 東獨으로 부터 法律上の 共助를 要請하여 오면, 이 問題를 担当한 西獨法院은 그 結果를 東獨의 地方 및 實務上の 當該法院에 直接 傳達하지 않는다. 또 事件이 西伯林法院의 管轄인 境遇에는 東獨法務部長官은 西伯林法務部長官에 公文을 發送하는 形式을 取한다. 이리하여 伯林法院이나 西獨法院에 의하여 東獨으로 法律上の 協調內容이 送付된다. 그리고 西獨에서 東獨에 要請하는 法律上の 共助申請도 西獨法院과 東獨法院間에 直接 傳達되는 것이 아니라 西獨法院이 所在하고 있는 그 州의 地方法務部長官을 經유하여 東獨法務部長官에게 傳達되며 解決된 案件도 同一한 方法으로 東獨으로 부터 西獨으로 傳達된다. 이러한 節次는 東獨의 固執으로 말미암아 1970年以來 實施되고 있으나 東·西獨檢察間의 共助關係도 1968年이래 역시 東獨의 一方的處事로 말미암아 西獨內의 地方 또는 實務上の 當該檢察廳이 東獨의 檢察總長에게 申請하게 되어 있으므로 直接的共助關係는 成立되지 않고 있다.

○ 文化的接觸

東·西獨間의 文化接觸에 對하여 東獨은 如前히 그가 主張하는

프찌히」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西獨訪問이 있었고 東伯林的 獨逸劇團도 西獨의 여러 都市에서 公演을 가졌다. 그리고 西獨演芸團 「힐데하임」과 「막테부르크」劇團이 「오닐」의 「밀짚」과 「과웰코츠」의 「80日間の 世界一週」로 東獨에서 公演을 가졌으며 「에센」의 「폴크방」 「발레」團이 東獨訪問公演을 가졌다. 1965年에도 東·西獨民間團體間의 文化的紐帶活動이 繼續되어 音樂分野에서 東伯林「희극오페라」團의 西獨公演이 있었는데 특히 公演後 同「오페라」團의 많은 數가 東伯林으로 돌아가기를 拒絶하고 西獨劇團에 參加한 點은 注目된다. 文芸分野에서는 1964年과 1965年에 伯林工科大学村에서 冬夏季「세미나」가 開催되었으며 學術分野에서 「막테부르크」에서의 「한스」歷史學會, 「작센」의 「프라이베르크」에서의 「山林人協會」年次總會 및 「할레」에서의 「獨逸아카데미年次總會」에 西獨科學者들이 參席하여 講議를 하였다. 其他 西獨은 東獨에서 發刊되는 新聞雜誌를 통해 東獨의 實情과 統計的 現況把握이 可能하였다.

一般的으로 東·西獨間의 文化學術交流는 民間「레벨」에서 制限된 水準으로 維持되었으며 특히 政治性和 密接히 關連되었다는 特色을 갖고 있다. 東獨側은 文化學術關係를 政治的目的에 利用하려고 努力하였다. 1964年4月21日 東獨의 文化省長官「한스·벤트진」은 西獨各州의 文教長官들에게 보낸 書翰을 통해 西獨各州의 文教長官 代理者와 東獨文化省代理者間의 「文化協商」을 提議함과 同時에 文化協定の 締結과 常設機構로서 「委員會」의 設置를 主張하였다. 이에 對하여 西獨側은 兩獨間의 文化學術面에서의 接觸은 單純히

1960年의 「올림픽」에 東·西獨이 單一「팀」으로 參加하게 되었으나 1959年以來 새로 制定된 東獨國旗佩用問題를 中心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問題를 調整하기 위하여 國際「올림픽」委員會는 單一獨逸「팀」을 위한 새로운 「올림픽」國旗로써 「黑赤黃」에 다 白色의 「올림픽」五輪이 든것을 使用하도록 指示하였다. 그後 1964年 東京「올림픽」에서 東西獨單一「팀」이 構成되었다. 그러나 單一「팀」構成을 위요한 問題에 屢證을 느낀 國際「올림픽」委員會는 1965年 10月의 「마드리드」會議에서 「東獨體育會」를 「體育會 東獨」이라는 稱号하에 國際「올림픽」委員會의 正會員으로 加入시킬 것을 決議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1968年의 「멕시코」 「올림픽」에는 「獨逸」과 「東獨」이라는 稱号로써 二個의 獨逸「팀」이 參加하게 되었다. 물론 國旗는 앞에서 말한 內容의 것을 使用하였지만 國歌는 「베토벤」의 第9番合唱交響樂, 第4樂章 「歡喜의 贊歌」를 演奏하였다. 이러한 國際「올림픽」委員會의 決定에 對하여 東獨은 그가 主張한 國際法上的 承認을 成就한 것으로 看做하고 西獨에서 開催되는 國際競技나 他國에서 거행되는 試合에서도 「東獨」이라는 表識과 東獨國旗 및 國歌 등을 使用함으로써 事故가 發生하였음은 물론 그들의 要求가 관철되지 않는 境遇 退場戰術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事情을 勘案한 國際「올림픽」委員會는 1968年 11月 12日부의 「멕시코」會議에서 「獨逸人民體育會」에 完全한 平等權의 認定을 決議하였고 西獨政府도 1968年 12月 18日부의 決議로써 1972年 「문헨」에서 開催되는 國際「올림픽」은 國際「올림픽」規定에 따라 行爲할 것을 示인하였다.

## (2) 經濟的接觸

東西獨間的 經濟交流는 다른 어느 部分에서도 볼 수 없으리만치 敗戰直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秩序整然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經濟的交流는 沿革的으로 볼 때 東西伯林을 包含하는 東西間의 商品去來와 勤務支拂에 起因된 것으로서 그 始初는 獨逸占領地域間의 商品去來에 主目的이 있었다. 1945年의 「포츠담」會談에서 聯合國은 그들이 占領하고 있는 期間中 獨逸을 經濟的으로 單一체로 보고 또 占領地域間에 重要商品을 均等하게 配分할것을 決議하였다. 勿論 이 決議에도 不拘하고 1948年 6月 西方聯合國占領地域과 蘇聯占領地域에서 각각 貨幣改革이 實施됨으로 말미암아 異質的經濟圈이 樹立되므로서 東·西獨經濟交流는 制限을 받았지만 占領地域間의 交流型態로서 經濟的交流는 持續되어 왔다.

占領地域間經濟交流의 첫 經驗은 英國占領地域과 蘇聯占領地域間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協定에 의하면 英國은 41,320 「톤」의 強鐵과 鐵을 蘇聯占領地域에 供給하고 蘇聯은 180,000 「톤」의 褐炭과 500,000 ㎡의 연소용나무를 英國占領地域에 供給할 義務를 지고 있다. 그후 이先例에 따라 美國과 蘇聯, 仏蘭西와 蘇聯占領地域間에도 같은 類의 物品交換協定이 締結되었다.

그러나 東·西獨間經濟交流의 法的基礎는 1951年 9月 20日부의 「占領地域間의 商品協定」이다. 이 協定은 一名 「伯林協定」이라고 하는데 1960年 8月 16日부의 改正으로써 東·西獨經濟交易의 法的基礎를 確立하게 되었다. 이 協定의 根本的規定은 商品品目, 商品口座

東獨은 1961年을 계기로 蘇聯과 密接한 經濟關係를 맺음으로써 西獨에 대한 經濟的隸屬을 脫皮하려 하였다. 蘇聯의 經濟的支援을 얻은 東獨은 對西獨經濟隸屬으로 부터 漸次 脫皮함으로써 伯林과 獨逸問題에 대한 獨自的決斷의 必要性에 따라 西獨과의 交易을 緩和하고 기타 西方側工業國家와 交易增大를 試圖하고 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東獨은 다시금 西獨과의 經濟的交流를 갈망하면서도 東·西獨交易을 「두個의 獨逸國家間의 對外交易」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西伯林을 西獨에 隸屬되지 않은 地域으로 看做하고 東獨은 西伯林과 特別한 關係에 立脚한 通商關係를 締結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한편 東獨은 經濟的發展을 企圖함과 동시에 西獨政府가 取하고 있는 對東獨政策 특히 人道的인 側面에서 東獨住民의 經濟的地位向上에 置重하고 있는 것을 利用하여 1962年以來 西獨政府에 長期借款을 要求하여 왔다. 西獨政府는 1965年 4月 5日 이상의 借款을 주기로 決定하였고 1967年 3月에는 東·西獨交易에 있어서의 中期借款의 融資를 위한 公社를 創立하기에 이르렀다.

總體的으로 보아 東·西獨交易은 最近 數年間 強力한 增大一路를 걷고 있다.

東·西獨間의 相互供給量은 1960년에는 約 2.1 Mrd 「마르크」를 헤아리던 것이 1969년에 이르러서는 3.84Mrd 「마르크」로 上昇하였고 1970년에 이르러서는 4.5Mrd 「마르크」에 達하고 있다.

이와같은 供給量의 急進的增大는 西獨政府의 對東獨緩和政策과 아울러 通商促進策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東·西獨交易規模의 推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年度 規模 27 億 5,700 万 「마르크」 ( 東獨對外貿易總規模의 10% )에서 1967 年에는 25 億 3,750 万 「마르크」 ( 9% )로 減小되었다 .

1969 年 10 月 西獨에서 「브란트」政權이 成立된 後 「獨逸內 2 個 國家의 存在」가 認定되고 對東獨關係正常化가 政策的으로 追求되면서 부터 兩獨間交易量도 1970 年에 45 億 4,800 万 「마르크」로 伸張되어 1967 年度對比 約 60%의 增加를 나타내었다 . 이것은 東獨의 1970 年度總貿易量의 約 10%를 占하는 것으로서 西獨이 東獨의 第 2 貿易 「파트너」임을 말하는 것이며 西獨의 境遇에는 東·西獨交易量은 全體貿易額의 約 2%에 該當된다 .

西獨經濟는 「마살」援助計劃에 의하여 1959 年 12 月 31 日까지 39 億弗의 援助를 받아 重化學工業化의 길에서 1950 年頃에 이미 戰前 水準을 突破하였으며 1958 年 , 1959 年부터는 이미 對外援助를 開始하여 1961 年에는 對外經濟援助를 전담하는 經濟協力省을 設置하였다 . 西獨의 貿易構造는 OECD (經濟協力 開發機構) 諸國과의 貿易이 1967 年現在 全體의 70%以上을 占하고 歐洲共同市場諸國과의 貿易도 38%를 占하고 있다 . 對東歐貿易은 急速度로 伸張하고 있으나 그 分担比率은 4%內外에 不過하다 . 對EEC 貿易은 地域內關稅引下에 따라 增加되고 輸出額이 輸入額을 凌駕하고 있어 繼續적으로 黑字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 1968 年 國際通貨體制動搖以後에도 西獨은 도리어 黑字幅擴大防止에 努力하고 있는 처지이다 . 西獨의 開發途上國에 대한 經濟協力은 每年 國民所得의 0.8%로 最近年間 7 億弗에 達하고 있고 1964 年以後로는 民間資本輸出促進措置로 民間資本에 의한 援助增加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

EEO 諸國 과의 貿易 成長에 比해 相當히 낮은 成長率을 表示하고 있다 .

### (3) 政治的 接觸

民族分斷狀態의 變化 또는 克服을 爲하여 可能한 理論的 方法은 市民戰爭 또는 世界戰爭 등 暴力的手段을 통하여 分斷狀態의 變化를 追求하지 않는다면 分斷國 周邊의 強大國의 影響에 의한 間接的 解決方法과 分斷國 相互間의 直接的 接觸에 의한 直接 解決方法 등 두가지 方法이 있다 .

間接的 方法의 境遇, 獨逸은 兩獨逸國家의 媒介 또는 壓力에 의해 「포츠담」協定에 따른 二次大戰後 四大獨逸 占領國家, 적어도 兩超強大國인 美·蘇가 意見一致하여 講和條約會談을 통해 分斷狀態를 變化시킬수 있을 것이며 기타 다른 間接的 形態로서는 「유엔」의 媒介行動을 통한 分斷狀態의 變化를 생각할 수도 있다 .

分斷狀態 變化의 直接的 解決方法은 「兩獨逸國家」의 直接的 協商을 통하는 方法이다 .

勿論 이 境遇에도 1945年 8月 「포츠담」協定 四大強國 (美·蘇·英·仏)의 默視的 寬容이 前提되어야 한다 .

西獨은 1947年 「문헨」에서 開催되었던 全四大強國 占領地域의 州 首相會議가 失敗도 돌아가 1948年, 1949年 獨逸의 經濟的·法的 政治的인 分斷이 成立된 이후 여러가지 人間的인·經濟的인 그리고 文化的인 接觸이 이루어졌음에도 不拘하고 政治的 責任 「레벨」에서는

當時 東·西獨接觸 論議가 提起되자 異質體制下의 接觸試圖를 無意味하다고 主張하는 者도 許多하였으나 「키신거」西獨首相은 歐洲平和秩序樹立을 위한 緊張緩和政策以外의 다른 解決策이 없다는 立場에서 「브란트」外相의 政策을 포기하려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基民黨出身인 「키신거」의 立場은 冷戰政策의 持續을 不可能케 하는 事件의 反影으로서 結果的으로 1969年 9月의 總選舉에서 社民黨과 自民黨進步派와의 聯立下에 「브란트」政權의 形成과 연결되는 過程이었다. 이러한 展開過程에서 볼때 1966年을 起기로 西獨과 東獨內에서 兩獨間의 相互關係形成을 위한 相異한 概念들이 나타났는바 이 概念들은 兩獨間의 關係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可能性들이다.

첫째 再統一 및 合併의 政策概念 밑에서 西獨은 自由選舉를 통한 東獨의 合併을 主張하므로써 東獨現地域들의 加入을 통한 西獨의 領土的 擴大를 企圖하였으며 東獨은 社會主義革命을 통한 西獨의 合併으로써 西獨에 이른바 「民主的인 中央集權主義의 導入」을 企圖하므로써 東·西獨은 相互強硬路線을 堅持하였으며. 둘째 東·西獨 相互間의 孤立化政策概念 밑에서 西獨은 自由로히 選出된 唯一한 獨逸政府로서의 單獨代表權을 要求하고 「할슈타인」原則을 固守하고 西獨內에서 東獨人의 政治的目的을 위한 活動을 禁止하는 概念이 提起되었으며 東獨은 역시 「社會主義獨逸平和國家로서의 單獨代表權을 主張하며 西獨을 平和교란자로 規定하는 煽動政策을 자행하고 障壁 構築·銃殺命令 및 往來禁止措置에 의한 西獨에 대한 閉鎖概念이 대두하였다. 셋째 東·西獨問題의 中間解決段階로서 相對國家에

에 의해 西方強大國도 獨逸의 再統一을 支持할 義務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合併概念의 結果는 獨逸政策에 있어 東獨의 不承認, 東獨의 孤立化를 意味한다. 이러한 不承認의 政治는 東獨의 地位 向上을 막고 四大國責任을 弱화시키지 않기 위해 東獨과의 모든 政治的接觸을 배제한다. 겨우 伯林通過查證에 관한 協定 등 技術的 問題의 合意만이 可能하며 統一問題에 관해 東獨政府와 協商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러한 東獨의 孤立化政策의 結果로서 東獨體制의 弱化的 징후가 增加한 경우에만 論理的 合理性을 發見할 수가 있다.

그러나 東獨은 1961년부터 해가 갈수록 經濟的安定化와 더불어 政治체제도 더욱 鞏固化되어 갔다.

東獨體制的 安定化와 더불어 西獨의 院外에서 事實上的 承認形式으로 東獨에의 接近을 支持하는 사람들 數가 增加하였다. 이에 따라 國法分野에서는 過度期間 동안 「두個의 部分秩序」 即 두 國家 내지 臨時政府를 形成한다는 「部分秩序理論」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接近 概念의 理論的 出發點은 (1) 事實上 「2個의 獨逸部分國家」가 存在하여 (2) 이 「부분國家間」의 結合은 가까운 時期에 不可能하며 (3) 그러나 接近과 接觸의 포기는 緊張을 強化하고 分斷을 永久化하며 獨逸人의 結合을 파괴하고 모든 離散家族의 生活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部分秩序理論概念」의 도입은 統一에 이르기까지의 一種의 「暫定的政策」이다.

이러한 過程을 통하여 東獨에서 「에곤·바르」의 主張과 같이

하였음을 지지하는 立場을 취하였다 .

다 만 承認獲得概念도 合併概念 및 接近概念과 같이 獨逸統一의 達成이라는 窮極的目的을 포기 하지 않았다 .

獨逸政策에 있어서의 轉換의 계기는 1966年 東獨社會主義統一黨 (共産黨)이 西獨社民黨에 보낸 演士交換提議에서 비롯된다 .

1964年末 「모스크바」에서 「人民戰線策略」을 다시 活動化시킬 생각을 하게 되고 東獨이 西獨의 「에어하르트」政權下에서의 「經濟危機」로 不安하게 된 西獨에 影響력을 作用할 수 있는 希望을 갖이게 되었을 때 비로서 西獨接觸問題를 위한 새로운 狀況이 發生하였다 . 이에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은 人民戰線策略에 따라 1966年 當時 野黨이었던 社民黨을 公式接觸을 위한 對象集團으로 選擇하여 相互演士交換을 提議하기에 이르렀다 . 當時 社民黨은 獨逸政策의 脫出口로써 東獨과의 關係改善을 論議하였기 때문이다 . 그리고 當時에는 「에어하르트」政府의 東獨孤立化試圖가 1963年 12月 18日 「브란트」西伯林市長에 의한 伯林通行查證에 관한 協定締結에 의하여 緩和되고 東獨은 1965年 12月 17日 西獨의 全獨省과 有似한 國內機構를 마련하므로써 西獨關係는 점점 相互間的 孤立化 또는 東獨의 國際法上的 承認要求에 대하여 西獨의 外交的承認없이도 事實上의 東·西獨協同狀態로 이양될듯한 政治的環境이 造成되었다 .

東獨 共産黨指導層이 社民黨에 대하여 차별없는 條件下에서 接觸提議書翰을 보내기로 決定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狀況判斷의 要因들이 決定的으로 作用하였을 것이다 . (1) 西獨內에서 統一에 관한 論議와 分斷을 固着시키는 政治間的 不一致에 관한 不滿

外  
4  
유

「大全獨 諮問機構의 樹立을 제외 하고 (4) 西獨의 社會主義的 變革을 勸誘하는 內容이 었다 .

이처럼 事實的提議와 共產主義宣傳을 混合한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의 接近概念과 統一概念의 變形을 실현하려는 試圖는 西獨社會民主黨을 決定하기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었다 . 이에 對하여 西獨社民黨은 從來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의 提議를 默殺하는 方法과 單獨으로 協商에 나서는 方法 및 西獨聯邦議會內의 其他 政黨들과 共同步調를 取하는 方法등의 可能性이 있었다 . 社民黨은 中 第三의 方法을 採択하였다 .

이 경우 聯邦議회의 自民黨은 東獨의 獨逸自由民主黨이 自民黨에 發送한 書翰에 回答하였고 3月31日에 이미 兩黨의 代表者들이

「바드·홈 부르그」에서 會晤한 바 있기 때문에 社民黨과 共同步調를 取할 것이나 1949年 부터 與黨으로서 東獨不承認政策을 추구하여온 基民黨의 경우는 立場이 달랐다 . 勿論 基民黨內에도

「東獨의 權力所有者와의 公公然한 意見鬭爭」을 贊成하는 西伯林의 基民黨立場도 있었다 . 社民黨指導層은 1966年 3月18日 東獨社會主義統一黨에 보낸 第一次公開回信에서 協商을 어렵게 함에 틀림없는 수많은 非難點 예를 들면 銃殺命令 , 東獨에 있어서의 社民黨의 禁止 , 伯林障壁 , 自由往來의 防害 , 基本法의 「自由民主」秩序의 持續 , 協商에 對한 聯邦議회의 관 轄權 , 東獨에 있어서의 社民黨書信의 公用등을 言及하였다 . 이후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의 갖은 計策과 壓力에도 不拘하고 社民黨指導層은 聯邦議會諸政黨의 共同行動을 표방하였으며 社民黨々首 「브란트」는 黨代議員들에게 「獨逸社會主義統一黨」

「아테나워」가 主導한 東獨孤立化政策의 終末을 意味하여 「에어하르트」의 小聯政은 몇 週後 經濟政策失敗로 瓦解되었고 大聯政의 樹立을 계기로 全獨接觸問題의 새로운 段階에 突入하였다.

西獨의 對東獨接近戰略은 理論上 두가지 相異한 方式을 想定할 수 있다. (1) 東獨의 承認問題를 부각시키지 않고 全獨接觸을 強化시켜 접증적인 相互間의 事實上 承認과 동시에 分斷된 獨逸에서의 人間的 便利化를 증진시키는 戰略과 (2) 우선 東獨을 國家承認하고 그 結果로서 東·西獨間의 關係改善과 人間的 生活의 便利化를 圖謀하는 戰略이다. 1966年 東獨 社會主義統一黨과 西獨社民黨間의 相互演士交換 試圖는 前者의 범주에 속한다.

1966年 12月 「본」에 基民黨과 社民黨의 大聯政이 形成되고 大聯政은 社民黨이 提示한 8個項綱領에 따라 첫째의 戰略에 立脚하여 東獨을 承認하지 않고 東·西獨接觸을 強化하는 攻勢의 政策을 促求하였다. 社民黨은 1966年 11月 11日 聯政參與의 前提條件으로서 8個項要求條件을 내 걸고 이 中에서 東獨에 대한 承認없는 「攻勢의 政策」을 要求하였으며 大聯政은 이에 따라 東方政策을 遂行하면서 東獨孤立化를 追求하여 1967年 1月 31日 「루마니아」와 修交協定을 締結하고 1967年 8月 3日 「체코」와 通商文化協定을 締結하였다. 이 協定 原文에서 西獨은 西獨의 單獨代表權을 疑問視하는 表現을 使用함에 讓步하고 1968年 1月 29日 에는 1957年 「할슈타인」原則에 의하여 斷切되었던 「유고」와 外交關係를 再樹立하였다. 이 와같이 「第2의 獨逸國家의 承認」이 아닌 現實的인 政策概念은

에 놓여 있는 東·西獨分斷現況의 特殊立場에서 起因된 것으로서 1966年 東·西獨政黨間에 演士交換試圖가 좌절되는 過程에서 1966年 6月 「올브리히트」가 西獨「期限付行爲安全法」의 이론바 「侵略的이고도 國際法 違反的인 單獨代表權」을 비난한데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西獨의 單獨代表權要求와 兩獨間의 接近政策을 維持하려는 兩面政策의 所産이기도 한 것이다.

東獨은 西獨에 의한 東獨의 國際法的承認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國內的 態勢를 強化하였다. 1967年 2月2日에 「全獨問題省」을 「西獨問題省」으로 改名하고 1967年과 1968年을 통하여 東歐陣營의 「파트너」國家들과의 雙務條約締結을 통하여 東獨을 孤立化시키기 위한 西獨의 對東歐國우회 接近政策을 견제하려고 시도하였다. 1967年 2月20日에는 東獨의 國民法이 發効되고 1967年 12月12日에 東獨人民議會는 西獨과의 共同性을 規定한 종래 刑法條項을 제거시키는 새로운 刑法典을 의결하였고 1968年 3月10日의 規定에 의하여 「네오나찌」黨員을 그리고 1968年 4月13日의 規定에 의하여 西獨政府構成員과 官僚의 西伯林에로의 通過旅行을 禁止하였다.

1968年 6月13日에는 西獨間往來에 있어서 「비자」制 規定이 도입되고 東獨은 西獨의 新聞提供提議를 拒絕하였다.

大聯政의 獨逸政策은 國家的承認물결 밑에서 實行된 것으로서 東獨과의 接觸은 事實上 東獨을 承認하는 모험을 內包한 攻勢的 政策이라는 點에서 먼저 國際法的 承認을 하고 다음에 協商을 하자는 東獨의 立場과 對立되었으나 既存政策으로 부터의 方向轉換이 있음은

소 (1) 「東·西獨間의 規制된 併存에 合意하고 (2) 東獨의 國際法的承認要求의 拒否와 (3) 「兩政府次元에서의 協商」에 合意를 보았다. 이에 對하여 基民黨의 一部는 東獨의 철저한 孤立化라는 낡은 「아네나워」路線을 옹호하였다. 「東獨을 承認하고자 하는 者는 伯林을 포기 할 勇氣를 갖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물터·헤르만」基民黨院內總務는 특히 自民黨을 비롯한 東·西獨一般條約締結支持者들은 「東獨側의 “빨치산”集團」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런 對立背景에서 東·西獨接觸問題에 있어서 野黨의 位置에 있었던 自民黨과 大聯政의 社民黨間에 基民黨의 強硬路線에 反對하는 聯合戰線이 形成되었다. 1969年 4月 25日 聯邦議會에서 獨逸政策과 自民黨의 「一般條約締結案」에 對한 論爭이 벌어졌을때 西獨의 單獨代表權을 옹호한 基民黨에 對하여 「슈미트」社民黨院內 總務는 「用語의 崇拜를 警告하였고 當時 全獨相이며 社民黨院內總務였던 「베너」는 用語論爭이 狀態改善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野黨으로서의 自民黨과 大聯政間에서 協商機會의 評價에 있어서 明白한 差異가 있었다. 自民黨은 成果있는 協商이 기대될 수 있다는 希望에서 결국 國際法的承認은 아니나 國法上的 承認을 하는 條約締結提議를 원하였으며 이에 對하여 우선 協商이 成立되고 그 結果로서 東·西獨間一般條約이 成立될 수 있다는 것이 大聯政의 見解였다.

1969年 9月 28日의 總選舉結果는 社民黨과 自民黨進步派의 聯立으로 「브란트」政權을 탄생시켰다. 基民黨을 패배시키고 執權한

의 基盤 위에서의 對話를 제의하고 「에곤프랑케」를 協商者로 任命 하였으며 이 書翰에 對하여 1970年 2月 11日 東獨의 「슈토프」首相이 回信을 傳達하여 國際法的承認下의 規制된 共存과 東·西獨의 「유엔」加入을 強調하였으며 1970年 2月 19日 「브란트」首相을 東伯林으로 招待하였다 .

이리하여 1970年 3月 12日 東·西獨代表의 「코뮤니케」에서의 合意에 따라 1970年 3月 19日 東獨의 「에어프르트」에서 第1次東·西獨首相會談이 開催되었다 .

이 會談에서 「브란트」西獨首相은 다음과 같은 立場을 다시금 強調하였다 .

- (1) 東·西獨은 獨逸民族의 統一性을 尊重할 義務가 있고 동시에 東·西獨은 相互 外國이 아니며 (2) 그 外에는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 특히 모든 差別排除, 領土保全의 尊重, 모든 紛爭問題의 平和的解決을 위한 義務 및 兩側境界의 尊重義務原則 등은 効力을 가지며 (3) 條約當事國의 社會構造와 制度를 相互 尊重하며 (4) 東·西獨政府는 善隣的協調 특히 專門技術的인 協調를 위해 努力하며 (5) 全体로서의 獨逸과 伯林에 關한 四大國의 既存責任이 尊重되어야 하며 (6) 伯林問題 解決을 위한 四大國의 努力을 支持한다는 內容이다 .

이 東·西獨 「에어프르트」頂上會談에서 東獨은 다음事項을 要求하였다 . 即 ① 國際法基盤 위에 立脚한 그리고 如何한 差別도 없는 東·西獨間의 正常的이며 平等한 關係樹立 및 單獨으로 獨逸民族을 代表한다는 西獨政府의 主張을 拋棄하고 (2) 東獨과 他國家와의 外交

平和로운 共同生活과 無差別原則을 基盤으로 한 國際法의 一般的原則下에 關係를 設定할 意思를 公表하여야 한다.

(4) 條約當事者は 相互暴力의 위협 또는 행사를 拋棄하고 모든 問題를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할 義務를 진다 .

(5) 兩側은 国内最高權力에 該當하는 事項에 있어 두나라 各者의 獨立性과 自主性을 尊重한다 (6) 東·西獨國家의 어느나라도 결코 다른나라를 代身해서 行動하거나 代表하지 않음을 宣稱한다 .

(7) 條約을 締結하는 當事者들은 결코 獨逸땅에서 戰爭을 일으켜서 는 아니됨을 宣稱한다 . (8) 條約當事者들은 民族의 平和로운 共同生活을 妨害하는 모든 行爲를 中止할 義務를 진다 . (9) 條約當事

者들은 歐洲安保를 強化함에 이바지하는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모든 努力을 支持할 意思를 確認한다 . (10) 條約은 第2次大戰의 結果와 獨逸人은 두나라에서 살고 있으나 한 民族의 構成員이라는

特殊한 地位로 부터 出發하여야 한다 . (11) 伯林과 全獨逸에 對

한 4大國의 責任은 그대로 남는다 . (12) 伯林과 獨逸에 關한

4大國의 合意는 尊重되어야 하며 이는 西伯林과 西獨間에 맺어진

關係에 대하여서도 該當된다 . 兩側은 伯林과 伯林周邊의 事態正常

化를 위한 4大國의 努力을 支持할 義務를 갖는다 .

(13) 兩側은 兩國家 어느 部門의 立法間에 抵触이 있는가를 吟味하

指摘하고, 東獨人民은 自決에 의하여 「나치즘」, 軍國主義 및 帝國主義를 뿌리 뽑아 내어 「포츠담」協力の 履行을 注視한 데 反하여 西獨은 지난 25年 동안 「히틀러」 「파시즘」의 滅亡結果를 認定하려 들지 않았으며 第2次大戰結果로 成立된 歐洲에 있어서의 競界線들(東獨과 西獨間의 境界線을 包含해서)을 留保없이 窮極的으로 承認해야 할 不可避한 必要性을 西獨政府는 如前히 否定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1) 西伯林은 西獨에 屬하지 않는 獨立된 政治的單位體이며 (2) 東·西獨은 國際法에 따르는 同等權을 保有하며 (3) 東·西獨間의 經濟關係는 對外的經濟關係이며 (4) 東·西獨元首間에 同等한 國際法的關係樹立에 관한 原則의 合意가 成立되기 이전에 第2級 또는 第3級問題의 諮問을 위하여 委員會 또는 代表部를 設置하는 것은 事實의 核心을 벗어난 西獨의 戰術的目的을 表示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여 東獨의 國際法的承認을 要求하는 이른바 最大主張을 要求하였다.

이상과 같이 1970年 3月 19日 東獨의 「에어프르트」와 1970年 5月 21日 西獨의 「캄셀」에서 開催된 東·西獨首相間의 最初의 頂上會談을 總괄하여 볼때 「슈토프」東獨首相은 「國際法的關係의 樹立」 「東獨과의 外交關係의 樹立」 즉 東獨의 國際法的承認을 要求하였고 「브란트」西獨首相은 「民族의 統一性」과 兩獨逸國家의

## 다. 東方政策의 實際

### (1) 獨蘇不可侵條約

1950年 美, 英, 仏三國에 의한 對獨戰爭狀態終結宣言, 1955年 蘇聯에 의한 對獨終戰宣言 및 獨蘇外交關係樹立協定이래 1970年 8月 12日 獨蘇間에 武力不行使 및 協力에 관한 獨蘇條約이 正式調印되므로써 (1972.5.17 西獨議會批准) 獨.蘇關係는 물론 戰後 歐洲情勢에 劃期的인 轉換을 갖어 왔다.

獨蘇不可侵條約은 西獨「브란트」首相이 展開한 東方政策의 產物로써 西獨은 對東歐國外交에서 「強硬政策」을 脫皮하여 東方外交에 「이니셔티브」를 掌握하게 되었을뿐만아니라 그 經濟力에 相應하는 政治的 發言權을 回復할 段階에 접어들므로써 歐洲의 政治, 經濟的版圖과 世界政局에 큰 變革을 予見케 하기에 이르렀다.

1969年 10月 21日 首相에 就任한 「보란트」는 施政方針演說에서 東方政策의 일환으로 對蘇武力不行使協定締結의 必要性을 強調하였으며 1969年 10月 29日 「셸」西獨外相은 「할슈타인」原則의 廢棄宣言으로 東歐諸國과의 積極接近政策을 採択하였으며, 이어서 1969年 11月 13日 「슈토프」東獨首相이 西獨과의 國交樹立交渉用意를 表明하므로써 東西獨間對話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그리고 同年 11月 29日 獨.蘇交 渉에 앞서 核擴散防止條約의 批准을 바라는 蘇聯의 提議를 받아들여 西獨은 이 核擴張防止條約에 調印하였다.

이어서 12月 8日 西獨과 東歐諸國 및 蘇聯과의 빈번한 交渉을 土 臺로 드디어 「모스크바」에서 獨.蘇武力不行使協定予備交渉이 開始되

政治的 地位를 回復하고

둘째 이상과 같은 緊張緩和의 基盤을 出發點으로하여 平和的方法에 의한 統獨의 條件을 造成하고 伯林問題解決을 위한 漸次的接近을 可能케 하며,

셋째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등 東歐諸國과도 類似한 一連의 條約을 締結하는 契機를 造成하고 東歐의 全般的인 緊張緩和를 實現하며 東獨과의 漸進的인 關係正常化를 기도하고,

네째 蘇聯및 東歐國과의 經濟交流增大로 獨逸의 傳統的인 海外市場을 開拓하고 이로써 그동안 仏蘭西가 主導하였던 西歐의 對蘇對東歐 外交에서 「이니셔티브」를 掌握하며,

다섯째 이상 諸政策의 展開에 步調를 맞추어 西獨의 經濟力에 相應한 政治的 發言權을 回復하고 이로써 將次 西獨나름의 自由外交實現基盤을 構築하는데 그 目標을 두고 있다.

한편 蘇聯은 첫째 武力不行使宣言및 「오텔 . 나이제」線, 東西獨國境線등 現 東西歐間의 境界線을 固定시킴으로써 있을지도 모르는 西獨의 「報復主義」에 對한 東歐의 不安을 解消하고 이로써 蘇聯 및 東歐가 國內經濟的沈滯回復을 위해 注力할수 있는 國際環境을 造成하며

둘째 深刻한 經濟的沈滯로 부터 西獨과의 經濟및 科學, 技術分野의 交流를 強力히 바라고 있는 蘇聯은 歐洲共同市場이 擴大되어 歐洲에 強力한 經濟圈이 形成될것이 予想되는 現在 「코메콘」의 指導國家로써 歐洲共同市場의 中心國家인 西獨과의 經濟協力으로 새로운 經濟的 發展을 期待하고

셋째 이로써 東歐勢力圈을 實際적으로 固定化하여 西獨으로 하여금

가 있으며

(7) 緊張緩和와 關係改善을 위해 双方은 東西独의 「유엔」加入을 위한 對策을 講究하며

(8) 「문헨」協定の 無効와 기타 關連된 問題는 「체코」와 西独双方이 수락가능한 形態로 解決하고

(9) 双方의 利益과 平和를 위하여 經濟, 科學, 文化交流를 增進하고

(10) 歐洲安保會議의 開催를 위하여 可能的 모든 措置를 取한다는 內容이다.

「바르. 그로미코」案에 基礎하여 1970年8月12日 「모스크바」에서 條印된 獨蘇不可侵條約은 本條約 및 두個의 附屬文書 곧 「獨逸聯邦政府가 蘇聯政府에 보내는 獨逸統一에 관한 書翰」그리고 「全獨 및 伯林에 關한 4大強國의 權利와 關連하여 西獨政府가 駐蘇, 仏, 英, 美, 各國大使館에 보낸 覚書」로 構成되어 있다.

獨. 蘇不可侵條約은 前文에서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立脚한 平和的協調, 兩國既存條約의 再確認, 兩國間의 經濟, 科學, 技術, 文化關係를 包含한 協調와 關係改善의 實現을 強調하고

第1條는 國際平和와 緊張緩和, 歐洲事態의 正常化와 平和的關係의 發展鼓吹, 歐洲의 現存事態를 始發點으로한 協商增進을 企圖한다고 規定하고

第2條는 紛爭의 平和的解決 및 武力不行使宣言을 規定하고

第3條는 歐洲平和를 위해 現存國境線을 認定하고 「오델. 나이제」線 및 東西獨國境線을 包含한 모든 歐洲諸國의 國境線은 不可侵이며

地位를 回復하였는바 이것은 西獨側이 거둔 最大의 成果이다.

第3條에서 現存歐洲國境線을 “尊重” “不可侵”이라고한 表現은 當初 “承認” 및 「움직일수없다」는 表現에서 一步後退한 것으로서 平和的手段에 의한 國境線의 變更可能性을 남겨두었고 統獨可能性을 남겨둔 前文과 함께 西獨側의 主張이 反映된 것이지만 一応 現存 國境線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事實上 東歐에 對한 蘇聯의 干涉權을 宣言한 「브레즈네프 .독트린」에 西獨이 同意한 結果를 갖어온다.

그리고 條約前文에서 間接적으로 言及한 統獨을 위한 獨逸民族의 自決權保有問題를 西獨政府가 蘇聯政府에 보내는 統獨書翰에서 再強調한 것은 外見上 西獨側의 主張이 反映된 것으로서 보이지만 實際로는 그拘束力이 疑問視되는 附屬文書에 明記하므로써 東獨의 反발을 무마하고 한편으로는 西獨社民黨政權의 國內政治의 立場을 考慮하여 許容된 극히 政治的인 文書形式이므로 그 具體的 實効性 與否는 장차 獨 . 蘇關係의 現實的인 狀況展開에 따라 解釈이 될 것이다.

蘇聯條約의 締結은 歐洲의 戰後 冷戰構造解消를 가져온 歷史的 事件으로 評價되고 있거니와 政治 軍事 經濟 各分野에 걸쳐서 廣範圍하고도 長期的인 影響을 歐洲와 나아가서 國際政治에 미칠 것이다 軍事的側面에서 歐洲를 中心으로 東西冷戰關係의 全般的인 解消傾向이 보다 뚜렷한 進展을 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나토」와 「바르샤바」條約軍閥의 相互 減軍可能性이 具體化될 것이며 「나토」에서의 美軍減軍論議가 보다 빨리 現實化되어 西獨의 軍事負擔이 增大될 것이고, 戰略武器制限會談의 進展을 促求하고 歐洲安保會議의 召集時期가 短縮될 것이고 西部後方地帶(歐洲)의 軍事的安定을 期하

力으로써 既存政策을 脫皮하여 英國의 歐洲共同市場加入을 促求하였던 것이다.

獨·蘇不可侵條約締結을 契機로 보다 明白히 된 歐洲의 冷戰解消와 共存「무-드」의 팽배는 「유엔」및 아시아各國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치게 될것인바 強硬反共外交를 柔軟反共外交로 修正하지 않을수 없었던 一般的인 國際環境의 분위기를 보다 加速시킬것이다. 그리고 西部後方地域의 緊張緩和와 安定化에 成功한 蘇聯은 앞으로 中共을 主對象으로한 아시아地域에 보다 注力할 可能性이 있고 「아시아」集團安保論實現은 위하여 積極的外交攻勢를 展開할것이다. 다만 對中共問題에 있어서 蘇聯은 現在 以上으로 關係惡化를 시키지 않는 方向으로 努力하게 될것으로 보이며 北傀의 武力挑發에 對하여서도 이를 沮止하는 方向으로 努力하게 될것이고 이로써 韓半島에서도 美·蘇協調에 의한 緊張緩和政策이 지속될것이다.

## (2) 「노벨·나이제」國境線問題

獨逸과 蘇聯의 中間地域에 位置한 「폴란드」는 그 地政學的인 位置때문에 歐洲政治史에 있어서 恆常 戰爭의 傷痕을 씻지못하였다. 獨逸間政治的인 「잇슈」인 「폴란드」西部國境線의 複雜微妙한 性格에 關하여 西獨政治指導者로서 새로운 態度表明은 相當한 難題로 看做된다.

「브란트」首相의 東方政策의 鞏固한 礎石定立은 「오델·나이제」國境線으로 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獨·蘇條約과 獨逸條約은 불가결의 連關性을 갖고 있으며 東方諸國의 對西獨政策의 包括的轉向을 의미한다. 「브란트」西獨首相은 現實認定

였고 「폴란드」를 비롯한 東方諸國으로 부터 西獨이 失地回復을 위  
 한 某種의 陰謀를 획책할것이라는 疑心을 갖게하였다. 「브란트」西  
 獨首相은 東歐國의 對獨不信感의 分解作業으로서 「오델·나이제」國境  
 線에 대한 現實主義的立場을 扨하게 된것이다. 다만 戰後世代로서  
 「오델·나이제」江地域에 居住하고 있는 「폴란드」國民은 故鄉取得權  
 을 갖으며 獨逸失鄉民의 復歸權도 認定되어야 되기 때문에 「브란트」  
 西獨首相은 “「오델·나이제」國境線認定은 講和條約締結時까지 暫定的  
 으로 公式化할 수 있다”는 但書를 부치고 있다. 이와같은 西獨의  
 立場은 獨·蘇不可侵條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條約第3條에서 規定한  
 現存歐洲國境線의 認定은 事實상 對東歐干涉權限을 宣稱한 「부레즈네  
 프·독트린」에 西獨이 同意한 結果로 評價되나 「그로미코」案에서  
 「全國境線의 承認」或은 「움직일수 없다」라고 表現되었던 것이  
 本條約에서는 尊重 或은 不可侵이라고 훨씬 軟化된 表現으로 바뀐것  
 은 統一可能性을 留保한 前文및 統一에 관한 附屬文書와 함께 平和  
 的手段에 의한 國境變更可能性의 餘地를 남겨놓은 것으로 解狀된다.  
 그러나 「브란트」西獨首相의 國境線問題에 대한 基本立場은 만일  
 歐洲의 安全保障體制가 確立되어 平和秩序를 創造하려고 決心한다면  
 더이상 過去의 國境線問題에 억매일수 없다는 것이다.

### (3) 統 獨 論

西獨政府는 1950年3月22日 獨逸統一의 手段으로서 占領國委員  
 會 或은 「유엔」監視下의 全獨逸自由選舉의 實施를 提唱하였다. 이  
 와 같은 西獨政府의 要望에 따라 西方側三國이 「유엔」事務總長에  
 대하여 全獨自由選舉實施의 前提條件을 調査할 國際委員會設置에 관한

여 자유選擧案을 撤回하고 獨逸人民을 煽動하므로써 獨逸自身の 中立化를 企圖하는 方向으로 對獨政策을 轉換시켜 對西方強硬條件을 提起하기 始作하였다.

1955年7月の「제네바」四大國首腦會議와 同年 10月11日에 開催되었던 4個國外相會議에서 蘇聯은 「獨逸에는 이미 二個의 相異한 國家가 存在함으로 獨逸의 統一은 오직 이 二 政府의 直接交涉에 의하여 漸進적으로 達成되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西方側의 自由選擧에 의한 統獨案을 拒否하였다. 그리고 蘇聯은 1955年9月20日 東獨의 主權承認에 관한 條約을 締結하여 東獨地位의 堅固化를 꾀하는 한편 東獨政權으로 하여금 駐獨全外國軍의 撤収를 前提로 東西獨間의 直接協商을 통한 東西獨聯邦案 或은 東·西委員會 設置案을 提起케하였다.

이 동안 西獨은 統獨의 實現은 聯合國들의 道德的政治的責任임을 強調하고 民族自決原則에 의한 全獨自由選擧를 계속 提唱하였다.

勿論 이 期間中 「힘의 政策의 一環으로써 採択된 西獨軍核武裝案은 國內의 統獨論議를 原子戰爭에 관한 論爭으로 轉換시킨 感을 주었고 「합프리」案 - 「조지·케닌」案 - 「이든」案 - 「라파키」案 등의 系譜를 가지는 所謂 中歐非武裝地帶設置論은 獨逸에 있어서의 緊張緩和를 모색하는 方案을 中心으로 國際的論爭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獨逸統一이 1954年10月の 「파리」協定에 嚴格히 規定된 바 4大國의 義務라는 論理的基準과 「自由와 平和속의 統一」이라는 大原則은 全國際輿論의 支持를 받았다. 또한 前記 「파리」協定締結當時 西獨은 이미 統一의 手段으로서 武力을 行事치 않을 것을

때문이다. 또한 西獨이 民族自決原則에 立脚한 自由選舉를 統獨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는것이나 東獨이 두 獨逸政府間의 直接協商을 前提로 하는 東·西獨聯邦制를 主張하고 있는것은 모두 相對便의 基本政策을 拋棄하라고 強要하는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1966年初부터 對東歐平和攻勢를 展開한 바있는 「에르하르트」西獨政府는 1966年3月25日 當時 世界115個國에 冷戰緩和와 獨逸問題의 確定을 提議하는 7個項의 「平和黨綱」를 發表함과 아울러 1966年4月29日 6個項의 「統一白書」를 發表하여 獨逸國民의 自決要求는 統獨政策의 바당인 동시에 그 核心임을 強調하였다. 이후 美·蘇間歐洲緊張和政策과 매를 맞추어 統獨問題에 관한 多元的인 國內論議가 展開되었다. 「브란트」社民黨黨首는 聯邦首相全獨相, 外相및 伯林代表로 構成되는 「獨逸理事會」를 設置하여 獨逸統一努力을 集中的으로 遂行하자는 「獨逸理事會」의 設置를 提議한바 있으며, 「바르겔」基民黨院內總務는 1966年6月17日 「뉴욕」에서 (1) 蘇·東獨間의 20年 期限附通商條約承認 (2)統一獨逸內의 蘇聯軍駐屯權 認定 (3)4大國代身全獨專門委員會를 設置하여 統一方案을 講究 (4)西方 三大國과 西獨은 統一研究를 위한 實務者團의 設置 (5)西獨에서의 共產黨合法化를 內容으로 하는 異色的統獨論을 提起하였으며 1966年7月6日 當時 副首相兼 全獨相이며 自民黨黨首인 「멘데」의 「할슈타인·닥트린」의 非現實性에 관한 宣言. 「베너」社民黨議員의 「獨逸經濟共同體案」과 「東獨政權不承認方針의 再考論」이 提起되었다.

1966年10月5日 「베너」社民黨議員은 獨逸經濟共同體案에서 (1)東西獨間에 經濟共同體를 構成하므로써 統一의 第一段階를 構築하고

「브란트」西独首相의 統独政策은 다음과 같은 理論的展開위에서 成立되고 있다.

첫째 東独을 “事實上の 國家”로 認定하고 있다. 東独承認論은 1966年西独大聯政期를 前後하여 「저널이즘」과 學界의 一角에서 부터 台頭되기 시작하여 1972年5月12日 東·西独通行에 관한 最初의 國家協定締結段階에 까지 發展하므로써 東独을 「事實上の 國家로 承認”하고 있으나 西独은 1970年3月과 同年5月の 「에어 프르트」와 「캄셀」의 東·西独頂上會談에서 明白히 된 바와같이 基本的으로 東独政權에 대한 法的承認을 하지않고 있다. 西独이 東独을 國際法的으로 承認을 하지않은 理由는 國際法的承認에 의한 東独의 國際的地位의 高揚을 견제하려는데 第一次의 目的이 있겠으나 가장 基本的的要因은 東独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할 경우 獨逸의 分斷을 固定化시키는 結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브란트」西独首相은 東独을 事實上國家承認한 結果로서 西独의 與黨인 「社民黨」과 東独의 執權黨인 「社會主義統一黨」指導者間의 對等한 立場에서 東·西独間의 諸般問題에 관한 交渉을 추진할用意가 있음을 表明하고 있으며 東·西独間의 現存競界線을 認定하고 있다. 특히 「오렐·나이제」線에 관한 西独의 特殊한 立場은 앞서 指摘한 바와 같다. 그리고 東·西独間의 相互關係를 規制하는 一般條約을 締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現在 東·西独與務者間에는 이 條約을 締結하기 위한 交渉을 進行시키고 있는 中이다.

둘째 「브란트」西独首相은 東·西独關係를 定立하기 위하여 「單一民族內의 2個獨逸國家概念」을 도입하고 있다. 이 「單一民族內

才 三 章 結 論

### 第 三 章 結 言

가. 韓獨兩國의 統一與件比較

最近 韓國에 온 一部 美國學者들의 見解나 美國의 言論과 「닉슨」·周恩來의 北京 共同聲明을 通해 「두개의 韓國」이라는 「現實」 즉 現狀으로 부터 出發하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緊張緩和가 특히 美國의 政策으로 表示되었다는 點에서 現在의 南北韓間의 關係를 國際政治的의 與件에서 볼 때 東·西獨間의 경우와 一部 類似性을 內包하고 있다.

특히 「7.4 南北韓共同聲明」은 비록 法的拘束力을 갖인 條約은 아닐지라도 歐洲의 冷戰體制의 終幕을 갓어온 獨蘇不可侵條約(1970年 8月 12日 假條印 - 1972年 5月 17日 西獨聯會批准)의 戰爭拋棄條項이나 現在 東西獨間에 論議되고 있는 一般條約이 包含하는 內容을, 同時에 內包하고 있다는 點에서 특히 注目할만 하다.

즉 東·西獨의 境遇는 非政治的 接觸, 經濟的接觸段階를 거쳐 政治的接觸段階에 突入하고 있지만 南北韓의 境遇는 비록 南北赤十字會談을 통한 非政治的接觸이 先行되었다고는 하나 基本的으로는 政治的接觸을 먼저하고 非政治的 經濟的接觸을 하는 逆順序的 接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東西獨接觸의 경우에서 予想할 수 없는 특히 國內政治的 問題性을 內包하고 있다.

다만 強大國의 現狀維持政策과 韓國問題는 韓國人 自身이 解決할 수 있는 그리고 自身이 解決해야할 問題로서 提起되었다는 點에서

뿐만 아니라 社会体制의安定性도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어 緊張緩和  
政策 追求의 要件이 不安定한 狀態에 있다. 極東地域은 朝蔭, 朝  
中軍事同盟體制를 基盤으로한 共產「뿌력」과 自由陣營의 韓·美相互  
防衛條約과 美·日安保條約의 三角防衛同盟體制間에 條約上의 軍事的  
均衡이 表面的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듯 하나 日本의 對韓政策  
(軍事的側面)은 아직 未知數이며 특히 極東地域에 있어서 政治的  
經濟的側面的 國際協力現狀은 極히 初步的段階에 있다.  
따라서 歐洲의 경우와 같은 政治的·經濟的 및 軍事的國際協力體制  
間의 相互均衡에 의한 緊張緩和要因은 極東地域에서는 아직 形成되  
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國際協力體制의 背景이 없이 갑자기 이루  
어진 緊張緩和政策에 따라 極東地域에서는 「南北問題」가 抬頭되어  
民族國家的利害關係追求와 더불어 「이데오로기」의 政治的·社會的  
機能이 問題될 수 있기 때문에 所謂「이데오로기」의 終末理論과는  
다른 次元의 緊張要因이 提起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이것은 所謂 反植民主義 또는 「解放戰爭」論이 現實적으로 作用할  
수 있는 可能性이 完全히 喪失되지 않았다는 點이다.

(2) 西獨은 그 의 莫大한 經濟力을 背景으로 緊張緩和政策을  
主體的으로 追求하여 歐洲의 現狀維持政策을 표방하고 있는 蔭聯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였으며 最近에는 獨蔭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東歐  
諸國과도 關係正常化를 維持하여 緊張要因을 大幅 緩和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東歐諸國과의 關係正常化를 追求하는 安保의 지렛대로

的 要求를 提起하고 있다. 즉 東獨과 北韓과의 戰略概念은 基本的으로 相異하다. 또 獨逸의 경우 西獨이 「自由往來」를 主張하고 東獨이 政治的統制는 勿論 現存하고 있는 狀態下의 東·西獨間 往來를 主張하고 있는데 反하여 韓國의 경우는 立場이 相異하다.

(5) 西獨의 統獨政策은 敗戰國으로서의 同一性理論으로 부터 그의 「單獨代表權」을 理論化하였기 때문에 民族自決權을 強調해 왔으나 韓國의 경우는 그 唯一合法性을 「유엔」決議에서 導出해 왔기 때문에 특히 「유엔」의 中共加入을 契機로 促進될 構造的 變化가 問題示되고 있다.

(6) 그리고 國內政治에 있어서의 基本的 差異點은 西獨은 冷戰思想이 現執權勢力에 의해 克服될 수 있는 條件下에 있으나 韓國의 경우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點이다.

#### 나. 問題點 및 對策

이상과 같이 東·西獨과 南北韓의 統一條件은 基本的으로 相異하다. 그러나 南北赤十字會談과 「7.4 南北聲明」등으로 分斷國의 直接 交涉과 接觸에 의한 統一問題의 解決이 提議되고 있는 現實만은 同一하다. 따라서 東西獨接觸의 歷史的經驗은 우리에게 唯一無二한 敎訓이 된다.

東西獨接觸의 經驗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點과 對策을 提示한다.

고 展開되어야 한다. 즉 統一論議의 國際的基盤을 考慮하여야 한다.

(4) 西獨은 現段階로서는 東獨을 “事實上承認” 하고 이미 東·西獨通行에 관한 一종의 國家協定도 締結하였으며 現在 相互關係를 規制하는 東·西獨一般條約을 論議中에 있으나 東獨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하는 것을 決코 反對하고 있다.

東獨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할 경우 東獨의 國際的地位를 向上시킴으로써 西獨의 對外關係에서 問題點이 提起될 뿐만 아니라 東·西獨分斷을 國際法的으로 固定化시키는 結果가 되어 東西獨統一의 可能性을 永遠히 喪失한다는 것이 東獨을 國際法的으로 不承認하는 理由이다. 그러나 한편 西獨은 東獨과 第三國과의 外交關係樹立을 認定하고 東·西獨의 「유엔」加入을 夙成하고 있다.

이것은 政策轉換에서 提起되는 과도적인 外交的 國際法的 現狀현상이다.

이상과같은 東·西獨接觸의 經驗에 비추어 南北韓接觸이 擴大될 경우에도 北韓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하여서는 안되며 東·西獨關係를 國際法上 國家對國家關係와는 다른 「特殊關係」라고 設定한 것과 같이 南北關係를 規定하는 理論的 「모델」을 開發할 必要가 있다.

(5) 東·西獨間의 政治的接觸은 具體化되고 있으나 「한 民族內的 두개 獨逸國家概念」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事實上 상당한 期間동안 獨逸分斷의 固定化를 意味한다. 따라서 現 東·西獨의 統一概念속에는 「聯邦論」등 東·西獨을 統括하는 單一政治體制